

교육기반시설 배치에 관한 규정

2003. 06. 27. 최초제정
 2009. 08. 01. 부분개정
 2012. 08. 01. 부분개정
 2016. 04. 01. 부분개정
 2022. 12. 01. 부분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라 한다)의 각종 시설물 공간에 대한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관 부서)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부서에서 관장하고 조정한다. 단, 중요한 사항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개정 2022.12.01.>

제2장 공간배정 및 조정

제3조(공간배정 신청) ① 시설물 공간이 필요한 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공간배정 및 용도 변경을 주관부서에 신청한다.

1.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
2. 실험실
3. 총학생회 관련사무실 및 동아리실
4. 행정사무실

5. 기타 :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공간이나 여러 개의 공간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

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주관부서는 시설관리부서와 함께 공간의 필요성이나 예산, 공간 확보 또는 대체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조정하고,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류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시설 및 기자재 심의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<개정 2022.12.01.>

제4조(행정실 및 각종 실 규모 기준) 행정실 및 각종 실 규모의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검토 및 심의) 주관부서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 및 기자재 심의운영위원회는 공간배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청서와 의견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한다.<개정 2022.12.01.>

제6조(공간배정 결과통보)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설관리부서 및 신청부서에 통보한다.

제7조(공간사용 조정) 총장은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서의 신청 없이도 시설물 공간용도변경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단, 심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인 경우 교육시설 및 기자재 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22.12.01.>

2.12.01.>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. 8.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. 8.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시설물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 신청서

결 재				

1. 신청기관(부서)명 :

2. 위치 :

3. 규모(크기) :

4. 사용용도 :

5. 요청사유 :

6 기타사항

붙임 : 기본배치도(변경 전/변경 후)

위와 같이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부서장

인

[별지 제2호 서식]<개정2022.12.01.>

검토의견서

결 재				

시설물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교육시설 및 기자재 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신청기관(부서)명		사용용도	
규 모(크기)		위 치	
요 청 사 유			
검 토 의 견	법 적		
	행 정		
	예 산		
결 과			
비 고			

년 월 일

교육시설 및 기자재 심의운영위원회 위원장